

공시송달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규정 위반(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지서를 우편발송(등기) 하였으나,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공고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규정 위반(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6. 6. 16. ~ 2026. 7. 3.

□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 대상 및 내용**

성명(법인명)	차량번호	주 소	위반내용	위반 일시 및 장소	처분내용
주식회사 수*발	경기06*895*	경기도 파주시 *우고개길 *79, 1층(야당동)	건설기계 불법주기	(2026.4.1.) 파주시 광탄체육공원	과태료 5만원

□ **안내사항**

- 공고 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 파주시 버스정책과 운수지도팀 (☎031-940-5767)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공고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100의 가산금과 체납 1개월마다 과태료 금액의 12/1,000의 증가산금이 5년까지(최대75%)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파주시 버스정책과 운수지도팀 (☎031-940-57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6. 16.

파 주 시 장